

#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(3차)

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'지식재산 긴급지원' 사업의 2026년 (3차)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## □ 사업개요

-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 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

## □ 지원대상

- 지역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

## □ 접수기간

- 사업공고 : 2026. 6. 30.(화) ~ 2026. 7. 21.(화)
  - \*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·모집하며,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(<https://www.ripc.org/pms>)을 확인하여 신청

## □ 신청방법

-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<https://www.ripc.org/pms>)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\*
  - \* 신청시스템 접속(<https://www.ripc.org/pms>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·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  - \*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(양식준수)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복수의 세부사업을 신청하는 경우, 각 세부사업의 신청건에 대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 상에 각 신청건 별로 별도 제출

## □ 지원절차

-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 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
\* 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## □ 지원규모

-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(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 제외)

\* 단,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

## □ 기업분담금

- 기업분담금 : 40%(현금)

## □ 지원내용 (3차 공고)

-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국내상표출원 및 해외특허(PCT)출원을 지원

<지식재산 긴급지원 3차 공고 세부지원내용>

구분	세부 사업명	정부지원금 규모	분담금
국내출원 지원	상표	420천원 이내	현금 40%
해외출원 지원	특허(PCT)	2,280천원 이내	

## □ 선정평가

- ① [신속진단KIT] → ② 우대가점 → ③ 세부 선정심의(정량, 정성평가 합산) →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

<선정 평가 항목>

구분	항목	배점
정량	신속진단 KIT 점수(현장실사 결과 반영)	42
정성	지원사업 필요성	20
	지원사업 활용가능성	20
	수혜사업의 수행의지	20
우대가점	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	예 (1) / 아니오 (0)
	총점	103

**<신속진단 KIT>**

번호	문항	지표	점수
1	[지원 필요성]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(제품, 서비스 등)이 있는가?	없음 / 있음	0/5
2	[제품 출시]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? * 제품출시계획서, 수출계획서,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	없음 / 1년 이내 / 6개월 이내	0/2/4
3	[IP 보유현황]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건수는 몇 건입니까?	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	0/1/2/3
4	[IP 출원현황]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, 상표)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?	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	0/1/2/3
5	[IP 분쟁 위험도]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? *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	없음 / 있음	0/5
6	[기술 우수성]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 경력이 있습니까? *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벤처기업 인증, 특허기술상,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	없음 / 1~2건 / 3건 이상	0/2/4
7	[IP 상담이력]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 -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	없음 / 있음	0/4
8	[IP 관심도]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? -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	없음 / 있음	0/4
9	[사업화 준비]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,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? *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·장비 목록, 양산·제조 공정 개요서, 시험·인증·성능검증 계획서(결과서) 등 관련 증빙 보유	없음 / 구축예정 / 구축완료	0/2/4
10	[참여 의지]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?	미참여 / 참여	0/4
가점	[투자유치]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? *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	없음 / 있음	0/2
동의	[사업참여의사]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?	동의(체크박스)	동의
총 점수			42

**<신속진단 KIT Check List>**

번호	Check List	비고
기본 확인 서류	① 사업자등록증(중소기업확인 : <a href="http://sminfo.mss.go.kr">http://sminfo.mss.go.kr</a> ) (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) ② 전년도 재무제표	
1	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(기술, 서비스 등) 관련 내용 확인	항목 1
2	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※ 특허맵(국내)·디자인맵(국내), CI는 활용계획서/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/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	항목 2
3	◇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의 국내·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/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※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(개인 불인정) 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※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※ 등록원부 : 지식재산처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moip.go.kr">www.moip.go.kr</a> )에서 조회 출력	항목 3, 4

4	◇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, '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'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, 언론보도,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.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	항목 5
5	◇ 각종 수상경력서 /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※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메인비즈, 벤처 등	항목 6
6	◇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※ 방문상담(센터방문, 신청기업방문)만 인정 (전화상담 제외) ※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	항목 7
7	◇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	항목 8
8	◇ 인력조직도, 보유 시설·장비 목록, 양산·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	항목 9
9	◇ 대출약정서, 투자계약서 등 대출·투자 관련 내용 확인	가점항목

## □ 문의처

○ 서울지식재산센터 02-2222-3862 ※ 타 지역은 아래 참조

구분	센터명	문의처	구분	센터명	문의처
1	서울센터	02-2222-3862	14	전남센터	061-242-8587
2	경기센터	031-500-3043	15	광주센터	062-604-9241
3	인천센터	032-810-2881	16	전북센터	063-252-9301
4	강원센터	033-749-3331	17	제주센터	064-755-2554
5	충남센터	041-559-5752	18	경기남부센터	031-244-8321
6	대전센터	042-933-7821	19	경기북부센터	031-539-5163
7	충북센터	043-229-2738	20	강원서부센터	033-254-6580
8	세종센터	044-998-7773	21	강원남부센터	033-552-5555
9	부산센터	051-714-6957	22	충북북부센터	043-843-7005
10	울산센터	052-228-3085	23	경북북부센터	054-859-3093
11	대구센터	053-222-3146	24	경북서부센터	054-454-6601
12	경북센터	054-274-5533	25	경남서부센터	055-762-9411
13	경남센터	055-210-3098	26	충남서부센터	041-663-0041

## □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·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,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(연속지원 가능) 지원 가능하며,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
-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<http://www.kipa.org/ip-job/>
- 지식재산 긴급지원, 소상공인 IP창출지원,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,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

**< '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>**

구분	소상공인	IP 나래	긴급지원
지원대상	소상공인	창업기업	중소기업
중복제한 기준	(원칙) 소상공인 IP창출지원 - IP나래 -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(최대 2건)		
	(예외)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(특허맵, PCT, 상표 등)		

\* 특허전략개발원의 IP-R&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

-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(예정) 기업,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

- 이하 여백 -

[붙임] 세부 사업 지원 내용(3차 공고)

**1** 국내출원지원\_상표

사업목적

-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

지원대상

-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

지원내용

- 국내 상표 출원을 지원

지원기준

-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
- 기타 참고사항
  -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
  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  -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	공동출원 대상자
중소기업	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 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
개인사업자(대표자)	

- \*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

지원규모

구분	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
국내출원 지원	상 표	420천원 이내
자부담	현금 40%	
※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		

## 2

## 해외출원지원\_PCT

### □ 사업목적

-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### □ 지원대상

-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

### □ 지원내용

-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(PCT)을 지원

### □ 지원기준

- PCT출원 :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(단, 국문명세서 제출)
- 기타 참고사항
  -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
  -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
  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,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  -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	공동출원 대상자
중소기업	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 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
개인사업자(대표자)	

※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- 국내 출원무효,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

-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,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능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

□ 지원규모

구분	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 규모
해외출원 지원	특허(PCT)	2,280천원 이내
자부담	현금 40%	
※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		